

표지면지

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모색

인사말 **김영주** (국회의원)

■ ■ 발제문

발제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1
김보라미 (변호사,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 ■ 토론문

토론 1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9
토론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9
토론 3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25
토론 4 이창범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33
토론 5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39

인사말 |

국회의원 김 영 주

안녕하십니까 ?

국회 정무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입니다.

최근에 확인된 1억 4백만건이 넘는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개인정보를 무한대로 공유하는 현행 법체계와 금융관행, 정부의 관리감독부실,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모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정무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추가적인 2차 유출은 단언코 없다는 검찰과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3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약8천만건의 추가 유출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난과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모습과 실효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이번 개인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 당시 여야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와 같이 정보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핵심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

올 해에 확인된 개인정보유출 사고만 약 2억4천6백만건이나 됩니다. 개인당 5번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KT 고객정보도 유출이 확인됐고, 연이어 의사협회, 소셜커머스, 인터넷쇼핑몰, 택배사, 보험사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대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주민등록제도, 본인확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안과 걱정속에서 지내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을 논의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이 마련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소중한 고견을 발표해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해주신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 김보라미 (변호사,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김보라미 변호사

자기정보결정통제권의 실현

1. 수집단계에서 동의 (설명)
2. 수집후에는 투명하게 공개
3.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음

-
4. 거래당사자의 법적 지위의 비대칭성

위 1-3에 정부가 사전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관여(금융, 통신 등) - 정보독점의 문제 : 통신사에서의 본인확인제도의 문제, 금융지주회사들의 마케팅 목적 정보공유의 문제

5. 빅데이터 (비정형데이터)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카드사 사건과 자기정보결정통제권

1. 개인정보수집시 필수정보로 수집하는 정보는 적정한가 : 신용정보법, 주민등록번호 제도 (수집시의 문제점)
 2. 동의 없이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가 : 신용정보법, 금융지주회사법(활용의 문제점)
 3. 신용정보들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필요한 일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책설정의 문제점)
- * 특혜성 정보수집&활용질차들의 존재 : 과연 필요한 것일까?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유형	회사
고객의 가입정보 무단제공, 업무목적 외 유출, 조회	신한은행 (9. 9.), 삼성카드 (11. 9.), 하나SK카드(11. 9.)롯데캐피탈(10. 10.), 신한캐피탈 (11. 2.), IBK 캐피탈 (11. 12.), 메리츠화재 (13. 2.-13. 5.)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유출	현대캐피탈(11. 4.), IBK 캐피탈(9. 9.), 솔로몬 신용정보 11. 4.), 리딩투자증권 (11. 5.), 솔로몬투자증권(11. 5.),
테스트용 웹서버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하나캐피탈 (!1. 11.)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체결내역 노출	농협증권(11. 6.)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유출	한화손해보험 (11. 3.-. 5.)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사항과 점검

관련법	내용	진행어부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금지	미정 금융위 : 외부영업 이용을 제한하고 동의 없는 공유 제도 유지할 것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미정 - 대통령의 규제개혁안?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폐지	미정, 안행부 검토중? 금융위는 주민번호를 여전히 식별번호로 활용할 것을 예정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미정

정부의 대책들

1. 수집 보유단계 :필요 최소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2. 계열사, 제3자 정보제공 :목적제한, 삭제 등 절차 강화 -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여전히 인정하는 근거
 3. 불법정보수요발생 :대출모집인 등 관리 강화
 4. 임직원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실효성 제고
 5. 위반 시 제재
 6. 불법정보유통시장의 차단조치 등의 제도화
- 금융위원회 차원의 대책들 : 민원처리적 정책의 접근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

○ 관련자료의 상세한 공개의 필요성

1. 금융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정보취득의 어려움
2.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당국, 또는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권위 등의 관련 정보의 보고서 등 발간 필요성
3. 보고서의 발간과정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계기가 될 수 있음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보장

○ 근본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실현

1.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확보 : 진흥과 규제를 한 기구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프라이버시 독립 기구는 인권적 측면에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
2.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 다목적성, 불변성, 강제성
3. 자기정보결정통제권을 뛰어넘어 금융사에 주었던 특혜규정 폐지
 - 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공유규정 폐지
 - 나. 신용정보법상 동의규정 원칙규정 신설

결어

1. 금융사의 개인정보문제는 (1) 금융사들에게 주어진 현행법상의 특혜와 (2) 금융사들의 이윤추구와 무관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비독립적 프라이버시 정책으로부터 발생한 것
2. 민원처리와 세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과 더불어 근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기구의 확보, 주민등록번호 폐지, 특혜성 규정들의 폐기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토론문 1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소비자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필요

신용정보보호법...선택적 정보 무차별 수집 금지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연대책임 강화

금융지주회사법...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연대책임 명시

1. 정부 정책 대한 약평

정부는 지난 3. 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는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망라되어 있고 일부 대책들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했으나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이 난색을 표했던 핵심 정책들은 역시 대거 누락되었다. 특히 ▲신용정보 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손쉽게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계열회사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관리 책임 강화 및 사고 발생시 금융지주회사의 연대배상 책임 도입, ▲모집인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유통시 정보관리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 의무 및 사고 발생시 연대배상 책임의 도입 등이 그런 정책들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

현행 법제도대로 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 준다.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계속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이런 범죄 수준의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다. 신속히 관련 법률들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명목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워 정보 유출 건당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케 하는 명목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정보법의 개정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월 말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의 관리와 금융지주회사내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도입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거래 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모집인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모집인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모집활동에 기인한 이득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조항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의 수집과 유통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회사 자체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유통의 이익은 누리면서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 유인체계의 왜곡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모집인들의 손해배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설사 금융소비자들이 어렵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복구에는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왜곡된 유인구조를 정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판단 의무와 연대배상 책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불법 모집에 기인한 이득 역시 모두 부당이득이므로 전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3.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활용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금융지주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의 내부위험 관리, 고객평가 목적 등을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금융지주회사의 현실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 두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감독상의 조치(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 ‘고객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금융지주회사 등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다.

다만, 정보공유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예외를 두고자 한다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잘못이 있을 경우 그금융지주회사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경영관리 책임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금융지주회사는 계열회사들의 정보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종합점검하고, 시정조치 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종합대책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체제내의 전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및 유통 등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

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체제내에서 정보의 부당한 사용이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연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이제까지 정보공유의 최종 수혜자이자 실질적 경영관리 주체인 금융지주회사는 되풀이되는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다. 경영관리에 대한 권한만 누리 고 책임은 지지 않는 유인구조의 왜곡이 여기에도 다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적인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신용정보법 상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정보공유 사유를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신용정보 누출이라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 내부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별첨 : 2개 법안의 신규 조문 대비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여연대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신용정보회사등이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하며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과도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p> <p>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3의2. 거래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강요하는 일</p> <p>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업무수탁자의 신용정보 관리 현황의 일반적 적절성 2. 본인이 수집·관리 중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신용정보를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3. 모집업무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취득한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가능성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부당한 수집·이용·유출·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위탁받으려는</p>

〈신 설〉

제5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③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가 전항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업무수탁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시기·방법, 보고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업무수탁자가 신용정보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당해 모집업무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5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4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집업무수탁자를 활용하여 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수익의 범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집업무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생략)

〈신설〉

4. ~ 16. (생략)

④·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모집업무수탁자를 교육하지 아니한 자

4. ~ 1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토론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 발표)의 문제점

1) 금융분야 외 전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미포함

2) 금융지주회사 관련

▶ “금융지주 內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그룹단위의 신용위험관리, 고객분석 등 내부 경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을 계속 허용”하고 있음.

▶ 카드회사 고객이 아닌 은행 고객의 정보도 유출된 원인은 금융지주회사 간에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케팅 목적의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유출을 막을 수 없음.

▶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금지’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유독 금융지주회사에게만 예외를 둘 이유는 없음.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고객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유는 금지되어야 함.

3) 주민번호 관련

▶ 종합대책은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하겠다고 함.

▶ 실제 주민번호 유출은 창구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금융회사 내에 보관된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것이므로,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궁극적으로 금융영역에서도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 금융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이유로는 “주민번호는 금융부문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위해 정보를 집중하거나, 과세기반 확보(금융소득종합과세 등)를 위해 공공부문과 연계시 유일한 식별값”임을 들고 있음. 그러나 타 기관과의 연동이 반드시 주민번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체제개편 방안과 연동하여, 금융당국도 대체번호(예를 들면, 납세자번호)를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통신 실명제 -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

1) 문제점

- ▶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연이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임. 이는 본인확인기관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증명함.
- ▶ 아이핀의 경우 주민번호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핀 역시 명의도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또한, 최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아이핀 수천 건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듯이 아이핀 역시 안전하지 않음. 해결방안은 아이핀과 같은 대체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불필요한 본인확인을 폐지하는 것.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본인확인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있음.
-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특히 더 위험함. 본인확인기관은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 즉 내 취향이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 통신사 및 금융기관은 수천 개의 제휴 및 위탁업체와 관계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신사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결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앱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정보들이 본인확인 정보와 결합한다면 더욱 끔찍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것임.

2) 국회 미방위,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 필요

- ▶ 지난 2.1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통신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 이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통신사의 본인확인 정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은 필요하지만,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곤란함. 국회 미방위는 오히려 통신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함. 이에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신 실명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함.
- ▶ 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필요

3.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재편 필요

1) 현행 주민번호 체제의 문제점

- ▶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번호를 '본인확인(인증)' 수단으로 사용 : 아이디를 패스워드로 이용하는 꼴. 전 국민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인증효과'도 없어졌음.
- ▶ 국가식별번호의 범용적 이용 : 해당 번호의 목적 내 이용을 넘어서, 특정 번호의 범용적 이용은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 ▶ 주민번호의 연결자(key)로서의 이용 : 서로 다른 개인정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개인정보의 가치를 높여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의 유인이 되며,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 확산.

2) 주민번호 체제 개편 방향

- ▶ 주민번호 변경 허용 : 이미 전 국민 주민번호 유출. 기사화된 주민번호 유출 건수만 4억 건을 상회함. 전 국민의 주민번호의 변경이 불가피함. 또한, 개편된 주민번호 체제에서도 필요할 경우 변경가능하도록 해야 함.
- ▶ 일련번호로 주민번호 부여체계 변경 :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 노출이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 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사회 영역마다 목적별 번호 사용 : 변경된 주민번호를 현재와 같이 범

용적으로, 그리고 연결자(key)로 이용할 경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임. 주민번호는 거주관계 파악 등 행정목적으로 엄격하게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어야 함. 민간영역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영역에서도 용도별로 별도의 목적별 번호 이용 필요. (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 납세자번호, 의료보험증번호 등)

3) 사회적 비용의 문제

- ▶ 안전행정부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이유로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하고 있음.
- ▶ 오히려 현행 주민번호 체제 유지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키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이후, 카드 재발급에 든 비용만 500억이 넘음)
- ▶ 2014.8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기존에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던 대다수 민간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전면개편과 무관하게 어차피 자신의 시스템을 개편해야 함.
- ▶ 정부 시스템 역시 안전행정부가 주민번호와 연계된 대체수단을 만들든, 주민번호 자체를 없애고 다른 번호로 대체하든 기존 시스템의 개선 필요.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비용임.
- ▶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드는 비용은 ‘신뢰성있는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임. 사회적 혼란 완화 및 소요 비용을 고려한 일정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전환 과정을 둘 수는 있겠지만, 현행 주민번호 체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추진해야 함.

토론문

3

토론문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토론문 3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약 3개월여 동안 정부의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드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2014.1.27.)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및 본인확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서비스 제공시 이루어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공유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SKT 등 이동통신사를 비롯하여 제2금융권,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 유출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없는 단발성 논의로 끝날 경우 정보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한번 카드사 및 이동통신사 등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국회를 비롯한 범국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토론회는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올해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국회가 마련한 관련 법률안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과 관련한 권고 및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을 위해 부분적, 단편적 대응에 다른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 사고를 차단하고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며 둘째,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며, 셋째,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 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4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대책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
2.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하여 제대로 보관
3. 정보제공 등 동의서 양식을 중요 사항은 잘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
4.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환에 대한 수신 거부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5. 임원 등의 정보보호 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 유출과 관련한 금전적 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
6.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등을 통해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카드결제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 교체
7. 금융회사가 보유 도는 제공한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대응매뉴얼 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하지만 정부대책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30~50여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6~10개로 줄이면서, 추가적 정보수집은 수집 목적, 제공처 등을 설명한 후 고객 동의하에 수집하며, 계열사 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용기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대책안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10개 이하의 최소정보로도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정보가 부가적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가 계열사에서 마케팅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며, 앞으로도 수집 목적을 제한하기는 하겠지만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도 추가적 정보는 거의 대면 설명없이 깨알약관 고지를 통하여 동의하에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고지 및 동의에 의한 추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서도 물론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대명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최초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여타 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대책은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연결자(node-data)로 한 본인확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항¹⁾에 의거하여 법률 위반

사항이므로 실질적 대책이라기보다 법률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따름이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활용과 관련한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철회권 보장, 영업목적 연락 차단시스템구축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목적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원칙이어야 할 것이며,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제공과 폐기 대장 또는 전자적 개인정보 접속 및 유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도 카드사 정보 유출(2014.1.6.)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고, 지금도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주요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96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3개 법률 26개 법안 중 23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안이다.

대체적으로 관련 법안들은 개인정보 보호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한 법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제한 법안, 집단소송 및 피해보상 등 구제 관련 법안,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내 계열사간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문제를 개정하는 문제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의 제한과 고객에의 고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절차(이사회)를 거쳐 영업상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²⁾에서부터 마케팅을 제외한 내부 경영상 목적은 동의없이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법안³⁾,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한 법안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물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동의라는 대원칙에 특례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만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제한⁵⁾, 피해 보상⁶⁾ 및 신용정보 보유 기간의 제한⁷⁾과 관련한 법안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의되었으며, 그 외에도 과징금 등에 관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38)

3) 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819)

4)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516)

5) 김기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12),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758)

6) 박대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84)

처벌조항⁸⁾, 집단소송 도입⁹⁾ 등의 문제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최근 KT와 SKT 등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신용정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수집과 유통의 투명한 관리와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개정하는 법안은 없어 추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체계¹⁰⁾,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¹¹⁾, 관리감독 강화¹²⁾, 개인정보 파기¹³⁾, 피해자 배상¹⁴⁾, 처벌조항 강화¹⁵⁾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정하고자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법 위치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거나 원칙을 예외로 무력화하는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부정통신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의무¹⁶⁾, 광고성 정보 사전동의 방식¹⁷⁾,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¹⁸⁾, 개인정보 제공거부에 대한 서비스제공 금지 처벌¹⁹⁾, 피해자 보상체계 구축²⁰⁾ 등에 관한 내용이 발의되었다. 그 중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개선권고²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게시판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2010헌마47 2012.8.23.선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과 정보인권 보고서를 통하여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김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18), 김기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12)

8)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82)

9) 강기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27)

10)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57)

11)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766)

12) 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716)

13)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439)

14) 최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90), 박대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85),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12),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124)

15) 문희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446)

16)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68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61)

17) 이상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04)

18)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95)

19)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95)

20) 박대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86)

21) A/HRC/17/27(2011.3.21.)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정책적 제언

국가인권위원회는 UPR(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²²⁾ 및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²³⁾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안 권고안을 마련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토록 권고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1기제2기 NAP 권고 내용

<p>〈제1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원칙 확립 2.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3.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4.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p>〈제2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 2.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개선 3.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 개선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마케팅 이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일원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관련 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22) A/HRC/8/40(2008.5.29.) :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23) A/HRC/17/27(2011.3.21.)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다른 신분 확인 수단을 검토하고, 그러한 수단도 신분 확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는 상당한 근거나 타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료·금융·통신 산업 간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을 통해 검증

2.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나이, 출신지역, 성별 등이 공개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 마련
- 기업들로 하여금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
-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중단

3.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원칙을 현대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
 -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 통합·연동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Privacy by Default,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잊혀질 권리 등 도입
- 빅데이터는 정부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IT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포기라는 커다란 희생이 따를 수 있음

4. 마치며

우리나라는 GS 칼텍스, 옥션, 농협, 네이트 등 크로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뉴스가 이어져 왔다. 국회와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기 보다 정보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토론문 4

이창범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I. 금융정보 유출 경로·방법

○ 유출정보

- 이름,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타카드사 코드, 자가용 소유여부, 주거상황, 결제일자, 이메일주소, 카드유효기간, 신용한도 등(회사에 따라 다름)

○ 유출경로

- 카드사에 파견근무 중인 개인신용평가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A에 의해 USB, 노트북 등을 통해 유출. A는 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탐지시스템(FDA) 개발 프로젝트 총괄 관리 담당자임

○ 유출방법

- USB 등에 복사해서 빼낸 고객정보(1억4백만)를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

II. 금융정보의 유출 원인

○ 준법정신 결여

-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암호화, 접근통제, 수탁자 관리·감독, 보호조치 등의 의무 이행 소홀
- 변화를 거부하는 오랜 타성과 관행으로 제도와 실무가 따로 노는 법정시 풍조 만연

○ 산업간 규제 불균형

- 금융분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보다도 규제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도 소홀
- 개인신용정보 수집동의 의무, 파기, 삭제 의무 등이 없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비해 관대

○ 특권의식 및 배타성

- 금융회사들은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반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여러 의무와 책임을 면제받고 있음(ISMS인증, 암호화, 망분리 등)
 - ※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계열사간 정보공유, 주민번호 수집, 이용 허용 등 특권의식이 강하고, 금융당국 이외 조직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등 배타성이 강함

III.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이행력 강화

○ 민사책임 강화

- 법정손해배상제도, 단체소송제도(손해배상) 등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 ※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 등은 실효성이 낮거나 부작용 우려

○ 형사책임 강화

-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게 하거나 상향 조정

○ 행정책임 강화

- 과태료 수준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게 하거나 상향 조정
- 법 위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전액을 부과하되 감경사유 명시

IV.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현대화

○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일반원칙 적용

- 수집시 동의원칙 적용, 최소수집원칙(선택정보 동의 강요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 적용

○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삭제 의무화

- 해지 고객 개인정보의 영구 보존 중단
- 분쟁해결 등 목적 개인정보 별도 보관

○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행위, 이용·제공 동의의 유형화

- 동의 만능주의 개선 및 동의 강요행위 개선
- 기만적 동의 및 불공정 동의 관행 근절
-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 방지 등

○ 주요정보의 암호화, 망분리 등 조속 시행

- 주민번호,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주요정보
 - ※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에 대한 대응

○ 주민번호(주민등록증)의 실명확인 목적외 이용금지

- 주민번호를 Key값으로 사용하는 관행 등 개선
 - ※ 주민번호의 개인식별성 제거 및 변경 허용

○ 개인정보(특히 본인확인정보) 수요 감소 정책 추진

- 사회 전반적으로 익명거래 또는 익명활동의 자유 보장
 -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요구·허용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
-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해킹시도 등의 원인(암시장의 원인) 제거
 - 실명확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V. 기타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 의한 민간감시체계 강화
 - 단체소송 자격요건 완화
 - 단체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허용 등

-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강요 행위 근절
 - 필수사항에 선택사항을 포함해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
 - 동의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표준화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 다단계 하청구조로 되어 있는 외주업체 문제 해결
 - 소속감이 없고 통제장치가 부재한 하청/재하청 관리강화
 - 전산업무 수탁자 관리·감독 기준 제정
 - 전산업무 수탁자의 전문화·규모화 추진
 - 파견직원, 프리랜서 등의 채용절차, 관리·감독 방법

- 금융회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각종 특권, 예외 배제 등

토론문

5

토론문

-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토론문 5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1. 금융당국의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1) 내용)

-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
 - ⇒ 정보유출 및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예: key-pad 입력)하고, 암호화하여 제대로 보관
 - ⇒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억제하여 유출시 위험 감소
-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을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
 - ⇒ 고객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Do-not-Call)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구현
- 임원 등의 정보보호·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유출과 관련한 금전적·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
 - ⇒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여 불법정보 활용·정보 유출을 근절
- 금융자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를 전면 교체
 - ⇒ 해킹에 철저히 대응하고, 카드결제과정에서의 정보보호도 한층 강화

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4.3.10. 참조

- 금융회사가 보유 또는 제공한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정보유출시 대응 매뉴얼 (Contingency Plan) 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 ⇒ 기존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억제

2) 평가

- 지난 2014.1.22일 발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서 상당부분 구체화되었으나, 기존 제도를 보완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향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현재 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현황

- 카드사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검찰 발표(2014.1.8.) 이후 발의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 표와 같음
- 개정안들은 크게 정보유출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동의를 세분화하고 수집·제공요건을 엄격히 하며, 기관의 정보보호 책임(보안강화, 보유기간 제한 등) 강화,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음

〈표 1〉 「신용정보법」 관련 개정안 현황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이상일 의원	2014.1.28. (1909178)	최근 개인정보 유출 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등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등에 관한 현행규제가 충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용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형 또는 훼손되어도 해당 신용정보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의 보안대책 준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5조의2 신설)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김상민 의원	2014.1.29. (1909188)	<p>최근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다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의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를 신용정보주체의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6항 신설)</p>
김기식 의원	2014.2.27. (1909312)	<p>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음</p> <p>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이외의 정보 수집에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수집한 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금융사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개인의 정보들도 함께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p> <p>이에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활용할 때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매번 사전에 정보제공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으며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p> <p>또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 해당 정보주체가 자력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조회증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안 제38조의2 신설)</p> <p>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 파기 요건과 더불어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8조의2 신설)</p>
김정훈 의원	2014.2.7. (1909318)	<p>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20조제3항·제5항)</p> <p>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상거래관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보관할 경우에도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의2)</p> <p>다. 영업분할등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그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 정보를 별도 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제7항)</p> <p>라.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삭제 요구 등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38조의2)</p> <p>마. 문자메시지·이메일·전화 등 무차별적 모집·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거나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한 모집·광고에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안 제40조제7호)</p> <p>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누설·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단, 개인비밀 분실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p>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p>사. 개인적 비밀을 누설·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형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업무 정지를 부과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50조제1항)</p> <p>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제1항)</p>
강기정 의원	2014.2.10. (1909327)	<p>가.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러한 신용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간주함(안 제43조제1항)</p> <p>나.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3조제2항 신설)</p> <p>다. 손해액은 유출로 인한 이익액 또는 통상적인 신용정보의 사용에 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43조의2 신설)</p> <p>라. 신용정보 처리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p>
김용태 의원	2014.2.14. (1909382)	<p>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 이에 금융회사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등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일부 모집인이 그 모집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고 있음</p> <p>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금융법률 또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해당 모집인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모집인이 불법행위로 모집한 소비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여 영업이익을 취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금융회사 등이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모집경로가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 해당 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불법신용정보를 이용한 모집업무를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이익의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모집과정에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신용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5조의2, 제50조제2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3항제3호의2 신설)</p>
박대동 의원	2014.2.14. (1909384)	<p>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으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피해를 입은 신용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p> <p>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주체에 피해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p> <p>아울러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위탁을 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신설)</p>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김영주 의원	2014.2.18. (1909424)	<p>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된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최근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신용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낭비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을 때 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p> <p>이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안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52조제1항)</p>
인재근 의원	2014.2.19. (1909440)	<p>가. 신용정보회사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p> <p>나.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 및 개인비밀을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0조제1항)</p>
이학영 의원	2014.3.18. (1909758)	<p>「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이번과 같은 신용정보 대량 유출로 다수의 신용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다수의 중복소송이 제기되어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큼</p> <p>이에 신용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피해자들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3까지)</p> <p>한편, 현행법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동의절차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안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및 제52조)</p>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최종 검색일: 2014.3.24.)

- 장기적으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단기과제로서 현행 법령간의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 vs. 정보주체의 보호

-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해당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외의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제3자 역시 마케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아닌 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게 되면, 이는 정보주체보호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겠으나, 정보활용기관에게는 영업에 장애가 될 수 있음

4.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치밀하게 구축한다 하더라도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정보처리업무 관련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알게 된 제3자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시키는 사고를 막기는 어려움
- 결국 이는 정보의 중요성, 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함
- 정보주체에게도 정보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개개의 정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정보주체의 이해가 필요함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